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편성원칙) ② 교육과정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며,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졸업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적변동자(복학, 전과, 유급 및 재입학자)는 학적 변동 시점의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제7조(편성원칙) ② 교육과정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며,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졸업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적변동자(복학, 전과, 유급 및 재입학자)는 학적 변동 시점의 신규 교육과정을 허가 학기부터 해당 스쿨(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신규: 제11조(소단위전공 교육과정) ① 대학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전공(학과) 및 부서에서 소단위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반 교육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발, 인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운영,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무경계 전공제 교육과정)	조항번호 변경: 제12조(무경계 전공제 교육과정)
제12조(교육과정 인증)	조항번호 변경: 제13조(교육과정 인증)
제13조(교육과정 인증 절차)	조항번호 변경: 제14조(교육과정 인증 절차)
제14조(교육과정 운영)	조항번호 변경: 제15조(교육과정 운영)
제15조(교육품질관리)	조항번호 변경: 제16조(교육품질관리)
제16조(유의사항)	조항번호 변경: 제17조(유의사항)
부칙 추가	⑫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소단위전공 교육과정)의 내용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18. 10. 22.
개정	2019. 9. 30.
개정	2020. 11. 2.
개정	2021. 9. 27.
개정	2022. 2. 28.
개정	2023. 10. 16.
개정	2024. 10. 7.
개정	2025. 3. 31.
개정	2025.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사명을 근간으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달성하고 산업계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표, 비전, 사명을 근간으로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②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각 호의 체계를 활용하여 편성한다.
1. NCS 체계(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
2. CK-CEF 체계(ChungKang-Certificate Framework, 청강역량인증체계)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3년 주기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유형은 개발, 개편, 유지 중 선택한다.
④ 대학의 교육과정은 스쿨(전공) 및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방침, 교육수요자(학생, 교수자, 산업체)의 요구, 산업계 변화 동향과 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본 규정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스쿨(전공) 및 학과, 교양교육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전공 교육과정은 스쿨(전공) 및 학과,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원 주관으로 개발한다.
③ 모집단위(편제정원)가 없고,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편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며, 각 교과의 세부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과: 교양선택
2. 전공교과: 전공필수, 전공선택
3. 교직교과
4. 일반교과: 일반선택

제5조(용어정의) 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용어는 각 호와 같다.

구분		정의
1	핵심역량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에 근간한 학습활동 후 우리대학 학생들이 보편적

		으로 갖게되는 역량
2	스쿨역량 (=능력단위)	스쿨의 교육목표에 근간한 학습활동 후 스쿨(전공) 학생이 갖게 되는 역량
3	스쿨역량하위요소	스쿨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역량. 1개의 스쿨역량하위요소는 3수준(Super-Average-Basic)으로 구성되며, 교과목의 학습기준이 됨
4	교과목	교육내용의 묶음. 수준별 스쿨역량하위요소의 조합으로 구성
5	모듈	하나의 스쿨역량 또는 스쿨역량하위요소를 달성하기위해 이수해야하는 교과목 그룹
6	로드맵	특정 학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천 과정.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

제6조(개발절차) ① 교육과정은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환경분석
2. 교육목표 및 역량 도출
3. 역량 적합성 검증
4. 교과목 도출
5. 교수요목 작성
6. 교육과정 자문

제7조(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 일반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며,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졸업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적변동자(복학, 전과, 유급 및 재입학자)는 **학적 변동 시점의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적변동 허가 학기부터 해당 스쿨(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③ 1학점 1시간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 이상 편성할 수 있다.

④ 학기당 15학점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양 교육과정 및 학제의 마지막 학년학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편성함을 권장한다. 단, 특수사유(전공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국가고시, 전공 필수 자격증 취득, 모집정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습과목 시수를 전체 교과목 시수 대비 50% 이상 편성한다. 단, 교양 교육과정과 특수사유(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모집정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2년제 전공의 경우 전공필수 및 교양 학점을 포함하여 78학점 이상, 3년제 전공의 경우 117학점 이상 교과목을 편성한다.

⑧ 현장실습 교과목은 2학점, 주당 40시수, 전공선택으로 편성하며, 세부사항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⑨ 원격수업 교과목은 전공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양 교육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모집정지전공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일반교과의 편성은 무경계전공제 혁신전공제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교양 교육과정) ① 교양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구성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의 이수 조건은 2년제의 경우 8학점 이상, 3년제의 경우 10학점 이상으로 한

다.

③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원에서 편성하며, 전공 교육과정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은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 교육 기회 부여,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직무역량, 평생 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편성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3년제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7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매 학기 10학점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육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30% 이상 유지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⑥ 개발, 편성, 인증 모두 전문학사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산업체 위탁 교육과정) ①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은 산업체 직업기술 변화 능동적 수용, 산업체 교육 요구사항 반영 등 탄력적 편성 및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두고 편성한다

②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을 개설한 전공 대상으로 하며, 위탁산업체와의 협의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발, 인증 모두 일반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한다.

제11조(소단위전공 교육과정) ① 대학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전공(학과) 및 부서에서 소단위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반 교육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발, 인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운영,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조(무경계 전공제 교육과정) ① 대학의 창의, 융복합, 협업, 대학 정책상 필요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경계전공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교육과정 인증) ①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인증유형은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인증 유형		
1	개발	- 편성절차를 거쳐 교육과정 신규로 운영하는 경우 - 이전 개발인증 후 3년 경과시 - 교육목표, 인재양성유형, 스쿨역량 변경시 - 개편 교과목수가 전체 교과목의 30% 초과시
2	개편	- 교육목표, 인재양성유형, 스쿨역량은 유지한 채로 개편 교과목수가 전체 교과목의 30% 이하인 경우
3	유지	- 전년도 교육과정을 차년도에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③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휴학생의 재수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14조(교육과정 인증 절차) ① 교육과정 인증 절차는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인증 절차				
1	교육과정 작성 및 제출	원장 및 학과장은 대내외 환경분석, 요구분석 기반으로 교육과정안을 작성하고, 스쿨(학과)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안)을 제출한다.		
2	교육혁신센터 검토 및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	- 제출된 교육과정(안)은 교육과정혁신센터의 검토 후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교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진행한다. -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시 위원별 인증평가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교육과정 유지의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혁신센터에서 서면 점검) - 위원별 점수의 평균으로 인증평가를 심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인증평가 기준(개발/개편)		
		1	Pass	- 평균 80점 이상
		2	Non Pass	- 평균 79점 이하
3	교무위원회 심의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을 교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4	대학평의원회 자문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을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여 자문을 받는다.		
5	교육과정 확정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 교무위원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통과한 교육과정(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개시일 1개월 이전에 확정한다.		

② 교육과정 인증은 학기 운영 중에 불가함이 원칙이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모집정지된 스쿨의 교육과정은 개발 필요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인증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확정된 교육과정의 수정은 불가함이 원칙이나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과정 운영)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제반 절차를 따라 편성, 운영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반 절차			
연번	구분	주체	내용
1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인증 심의	스쿨/학과/교양교육원 대학(교육혁신센터)	-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교육과정 품질관리 환류사항 반영 - 직무분석을 통한 스쿨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인증 유형별 부합여부 검토 및 인증심의 시행
2	수업운영 계획 및 확인	스쿨/학과/교양교육원 대학(교육개발처) 대학(현장실습지원센터)	- 수업 개설 - 강의계획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

3	수강신청 및 수업운영 준비	스쿨/학과/교양교육원 대학(교육개발처) 대학(전자계산소)	- 학사시스템을 통한 강의계획서 공람 및 수강신청 - 수업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지원
4	수업 운영	스쿨/학과/교양교육원 대학(교육개발처) 대학(교육혁신센터) 대학(현장실습지원센터)	- 교과목별 수업 운영 - 학습부진학생 위한 지원 -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학생 역량평가	스쿨/학과/교양교육원 대학(교육개발처)	- 평가계획 기반으로 직무역량 수행 준거에 따라 평가 시행
6	교육과정 운영평가	스쿨/학과/교양교육원 대학(교육개발처) 대학(성과관리센터)	- 운영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재학생, 졸업생, 교수자, 산업체 대상 평가 시행
7	교육과정 품질관리	스쿨/학과/교양교육원 대학(교육개발처)	- 교육과정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환류계획 수립

제16조(교육품질관리) ① 대학의 교육품질관리는 교과목, 스쿨, 대학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다.

교육품질관리 체계				
연번	구분		주체	내용
1	교과목	학생 자체평가	학생 센터, 스쿨	- 학생의 강의평가(중간, 기말)를 통해 학습목표 달성도, 학생의 요구사항 파악
2	교과목	교수자 자체평가	교수자 센터, 스쿨	- 교수자 대상 매 학기 과목별 학습목표 달성도, 교육환경, 교육과정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된 수업에 대한 평가, 개선사항 파악
3	스쿨	학생대상 교육과정 운영평가	학생 센터, 스쿨	- 재학생 대상 스쿨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FGI 시행
4	스쿨	교육과정 운영평가	센터, 스쿨	- 스쿨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원장(학과장) 대상 자체평가(설문조사) 시행
5	스쿨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스쿨	- 교과목 차원의 평가(강의평가, 교수자 자체평가), 스쿨차원에서 시행된 각종 평가 결과, 교육과정 운영현황, 만족도조사 결과 종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6	대학	교육수요자 대상 만족도조사	센터	- 성과관리센터의 교육수요자 대상 만족도조사 활용
7	대학	교육과정 성과평가	센터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역량성취도 포함
8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센터, 스쿨	- 교육과정혁신센터 주도로 교육과정 현황, 스쿨 교육품질관리보고서를 분석, 종합하여 대학 차원의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제17조(유의사항) 이 규정과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⑥ (경과조치) 제6조(유의사항) ①항의 변경은 2022년 01월 27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 ⑦ (경과조치) 제3조(정의) ①항의 각 호의 변경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⑪ (경과조치) 제4조(구성)의 4, 제7조(편성원칙)의 ⑩항의 변경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 ⑫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소단위전공 교육과정)의 내용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별표1〉 인증평가표 서식

1) 개발 인증 평가표

교육과정 개발인증 평가표

심사대상	스쿨	
	전공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8	7	6	5	4	
I. 전략수립	1. 스쿨(전공)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과 연계성을 갖고 설정되었다.						
	2. 대내외 환경분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3.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II. 교육과정 편성	4.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인재양성유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						
	5. 인재양성유형에 도달하기에 적합하도록 스쿨의 역량 체계가 설계되었다						
	6. 역량 체계를 기반으로 교과목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다.						
	7. 교수요목에 교과목에 대한 기본정보와 학습목표가 정확하게 기술되었다.						
	8. 교수요목과 평가계획서에는 학습목표 달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학습결과물과 평가방법이 연계성을 갖고 기술되었다.						
	9. 인재양성유형별 로드맵은 학생의 학습설계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0. 교육과정의 운영(수업연한, 시수, 강의장 여건, 교과목 간의 연계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III. 구성원간의 의견 수렴	11. 스쿨(전공) 교수 전원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교수 전원의 합의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10	8	6	4	2	
	12. 교육수요자에게 교육과정 개발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다.	10	8	6	4	2	
	총계	100점 만점					
기준	☐ 평균 80점 이상: 인증 ☐ 평균 79점 이하: 미인증(재인증 실시)						

평 가 의 건 (스쿨(전공) 교육과정의 우수한 점, 보완할 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평가자 : _____(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2) 개편 인증 평가표

교육과정 개편인증 평가표

심사대상	스쿨	
	전공	

평가문항	평 가 등 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1. 개편 필요성에 대한 배경, 문제의식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2. 교육과정 개발시점의 교육목표를 근간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는가?						
3.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체계적인 분석방법과 절차에 의해 개편되었는가?						
4. 교육과정의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5. 스쿨 교수들의 합의과정을 통해 개편되었는가?						
100점 만점						점
☐ 평균 80점 이상: 인증						
☐ 평균 79점 이하: 미인증(재인증 실시)						
평 가 의 건 (스쿨(전공) 교육과정의 우수한 점, 보완할 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평가자 : _____(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